

의안번호	2204876
의 퇴 인	박성훈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G4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632억원, 2029년 383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2,499억원(연평균 500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안 제100조의30, 31)	-632	-558	-492	-434	-383	-2,499	-50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도 확대 - 전문인력 상시근로자의 고용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을 상향하여 감면한도를 확대 - 감면한도: (현행)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 (개정안)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및 전문인력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2	안 제100조의30, 31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허용 - (현행)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 (개정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금지 규정 삭제
3	안 제100조의3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 주주환원금액(주주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증가시킨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 -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및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법인에 대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X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
2	안 제100조의30, 31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
3	안 제100조의3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X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이에 따라 개정안 중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안은 법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정기신청분('24.1.1.~5.31.)의 지급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에 귀속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2025년에 지급되므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기준)
 - 자녀장려금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 개정안 중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감면한도 확대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는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감면한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기업의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고용 계획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식시장 상장법인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금액의 규모, 법인별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안 제100조의30, 31)

(1) 조세지출 규모

- 2023년(귀속연도 기준) 자녀장려금은 약 95만가구에 9,720억원이 지급됨
 -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분(2024년 지급)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이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에 따라 2023년 지급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표 2]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추이(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가구,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¹⁾
가구수	879	743	705	578	519	954
(증가율)	-	(-15.5)	(-5.1)	(-18.0)	(-10.2)	(83.8)
지급액	7,543	6,457	6,060	4,966	5,035	9,720
(증가율)	-	(-14.4)	(-6.1)	(-18.1)	(1.4)	(93.0)

주: 1) 기한 후 신청·지급분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된 자녀세액공제액 규모,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된 가구수를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정

-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95.4만 가구) 중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된 가구수는 36.0만 가구(37.7%), 차감 금액은 717억원 규모
- 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경우 자녀세액공제 차감액 규모만큼 세수 감소 발생

[표 3]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중 자녀세액공제 차감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구분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수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된 가구수	자녀세액공제 차감액	가구당 자녀세액공제 차감액 (만원)
'22년 귀속	홀벌이	439	103	158	15
	맞벌이	80	18	24	13
	합계	519	121	182	15
'23년 귀속 ¹⁾	홀벌이	647	224	442	20
	맞벌이	307	136	275	20
	합계	954	360	717	20

주: 1) 기한 후 신청·지급분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시 차감된 자녀세액공제액 규모(717억원)가 향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11.8%)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감소 규모 추정
 - 수급요건의 변화가 없었던 2019~2021년(귀속연도 기준) 기간 동안 수급가구가 연간 11.8% 감소한 것을 반영
 - 가구당 자녀세액공제 차감액(20만원)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할 경우, 소득세는 2025년 632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2,499억원(연평균 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 중복적용 허용 (안 제100조의30, 31)	-632	-558	-492	-434	-383	-2,499	-500

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도 확대(안 제12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의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감면한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기업의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고용 계획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최근 5년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93조원 수준으로 발생

[표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년)
감면실적	106	52	116	114	75	93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제대상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 각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 수 및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 수는 2022년말 기준 10,648개, 고용인력은 29.8만명으로, 이 중 공제대상인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1,804개 수준
 - ※ 단, 공제대상인 기업의 고용인력이 구분된 통계와 상시근로자 수 통계 등은 부재

[표 6]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현황: 2022년말 기준

(단위: 개, 만명)

특구별	입주기업수			종업원수	
	전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전체	연구기술직
대덕	2,454	447	137	9.2	4.0
광주	1,878	205	29	3.6	0.9
대구	902	235	19	4.1	1.5
부산	1,241	209	14	3.2	1.2
전북	780	195	23	2.8	1.0
강소	3,393	278	13	6.9	3.0
합계	10,648	1,569	235	29.8	11.6

주: 1. 입주기업 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

2. 종업원 수는 연구기술직 및 생산관리직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집계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innopolis.or.kr)

다. 주주환원금액(주주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증가시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 개정안에 따라 직전연도 및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증가시킨 주식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식시장 상장법인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금액의 규모, 법인별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인별 배당 및 자사주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금액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이는 법인이익 등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상황 대응을 위한 이익유보 등 기업경영상의 결정과도 관련이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할 경우 대체로 실적결산 이후 차년도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여력이 증가하지만, 향후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보할 경우 배당 등 주주환원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외에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감과 관계없이 배당성향을 유지하거나 실적 호조에도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 등으로 배당성향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주주환원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
- 참고로, 2020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의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7]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 추이: 유가증권 시장(KOSPI) 기준
(단위: 조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현금배당	33.2	28.6	26.6	27.5
자사주 소각	1.1	2.4	2.9	4.5
합계	34.3	31.0	29.5	32.0

자료: 한국거래소(현금배당) 및 금융감독원(자사주 소각)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법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2024년 도입되어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향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법인의 수 등을 현 시점에서 추계할 수 없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